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1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용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7조제2항 중 “금융채권자”란을 “금융채권자”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내부 심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내부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새마을금고법」 제29조제1항(「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 11.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③ (생략)</p> <p>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생략)</p> <p>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금융채권자</u>”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p>	<p>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 ----- -----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u>한국주택금융공사</u></p> <p>13. 「<u>주택도시보증법</u>」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u>주택도시보증공사</u></p> <p>1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u>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금융채권자</u>”란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u> ----- -----</p>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③ (생략)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내부 심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내부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③ (생략)</p> <p>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생략)</p>	<p><u>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새마을금고법</u>」 제29조제1항(「<u>새마을금고법</u>」 제67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u>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5. 「<u>신용협동조합법</u>」 제42조</p> <p>6. 「<u>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u>」 제19조의6제4항</p> <p>② (현행과 같음)</p>
---	---